3-23 직무발명 규정

2000.12.12. 제정 2025. 10. 2. 개정

주무부서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 려하여 발명활동 및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9.〉
- 제2조(적용범위 및 업무관장) ① 본교의 직무발명에 관한 관리, 운영 및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9. 19.〉
 - ②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하고 산학협력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보호법상의 품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배치설계권", "신품종권", "지리적 표시"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품종", "지리적 표시" 등으로, 그리고 "발명자"는 "창작자" 등 각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작한 자연인으로 본다. 〈신설 2017.9.7.〉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7., 2024. 9. 19.>
 -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교원임용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교원), 비전임교원(「교원임용 규정」제2조제4항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한다.
 - 2. "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 중 발명을 한 자를 말하며,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3.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거나, 본교, 본교 산하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본교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으로 본다.

- 4. "자유발명"이라고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5. "대학교명의"라 함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명의를 말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명의를 포함할 수 있다.
- 6. "모인(冒認)"이라 함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꾸미어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 7. "노하우" 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 8. "기술료의 보상"이란 본교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구성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 9. "이해충돌"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신설 2023. 5. 23.〉
- 제4조(권리의 숭계) ①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단, 저작권의 경우, 과제 협약에 따라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공표하여야 하는 저작권을 이 규정에 의해 승계한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신설 2017.9.7., 2024. 9. 19.〉
 - ③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④ 자유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 할 수 있다. <개정 2017.9.7.>
 - ⑤ 본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 ⑥ 본교가 권리를 승계한 후 발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승계를 포기하거나, 등록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대가 또는 평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2024. 9. 19.〉
- 제5조(발명자 및 중개자에 대한 보상 및 특전) ① 본교가 권리를 승계하여 발생한 지식재 산권으로 발생한 수입 중 일부는 발명자 및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교명의의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발명자에 대한 승진(급) 등 인사

상 특전에 관한 사항은 「교원임용 규정」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19.]

제2장 권리의 소속

-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단장에게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발명신고를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승계,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 ③ 제1항의 발명신고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 우 산학협력단은 본교 관련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7.〉

[전문개정 2024. 9. 19.]

- **제7조(숭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9.7.>
 -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 ③ 산학협력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미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도 본교 및 산학협력단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17.9.7., 2024. 9. 19.>
- 제8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7.〉
 - ② 산학협력단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본교 및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유권 및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7.9.7.〉

[전문개정 2024. 9. 19.]

- 제9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8조에 의해 권리를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7.〉
 - ②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7.>
 - ③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9.7., 2024. 9. 19.〉

- 제10조(출원 등의 제한) ① 직무발명 등을 행한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본교가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② 발명자가 고의로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제46조에 의거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 ③ 발명자가 과실로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단장과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권리의 재양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는 제반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 ④ 발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산출된 출원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경우, 산학협력 단은 승계된 해당 출원의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시 등록수수료 납부로 인한 유지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은 권리 포기 시 별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9.7.〉
- 제11조(제비용의 부담) ① 본교가 제8조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을 위한 제 경비는 본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해외출원을 위한 제 경비는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담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 ② 발명자 개인명의 소유에 의해 권리승계 이전에 발생 및 부담한 관련 비용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 ③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 ④ 본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해당 과제의 관련규정 및 별도 약정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9. 19.>
- 제12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 은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보유할 기간을 의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 후 6년을 유지한다. 그 절차와 방법은 산학협력단「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② 지식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해당 교직원 등에게 소정 비용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③ 필요시 산학협력단은 보유 지식재산권의 유지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9.7.>

제3장 지식재산심의위원회

- 제13조(지식재산심의위원회)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재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7., 2024. 9. 19.〉
-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본교와 교직원 등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9.7., 2024. 9. 19.〉
 - 1. 위원장 : 산학협력단장
 - 2. 부위원장 : 기업기술이전센터장
 - 3. 전공별 전임교원 5인 내외
 - 4.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중 기업기술이전센터장이 추천하는 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 그 중 1인은 '간사'를 겸한다
 - 5. 변리사 등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삭제 <2025. 10. 2.>

-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7.〉
 - 1.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유지 여부
 - 2. 해당 발명의 국제출원 지원 등의 여부
 - 3. 직무발명 등의 기술평가
 - 4. 평가지원사업 등의 후보기술 선정 여부
 - 5. 해당 발명자에 대한 지원이 이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정함이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지원 여부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직무발명을 행한 교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4. 9. 19.〉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유효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 ③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전임교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가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산학협력단「외부연

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4조제4호사목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표에 따른다. 〈신설 2025. 10. 2.〉

제4장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

- 제18조(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이로 인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기술마케팅 및 수요기업발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9.〉
- 제19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다음 그 수입의 50% 이상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발명자의 연구 과제에 재투자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제한 조건은 산학협력단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형태 및 시기 등은 발명자와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7., 2024. 9. 19.〉
 - ② 지원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이 있는 연구과제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은 관련 지원기관의 기술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 ③ 기타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은 계약에 따라 정한다.
 - ④ 기술이전 중개자에 대한 보상은 중개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되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9. 19.〉
- 제2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상 금의 지분은 발명신고시의 지분을 따른다. <개정 2017.9.7.>
 - ②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발명자의 동의하에 보상금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발명자간 이의로 지분 결정을 못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후 단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1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료가 본교에 납부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9.7., 2024. 9. 19.>
- 제22조(보상금의 숭계) ① 보상금을 지급 받는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승계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연락처로 보상급 지급을 통보의 연락을 시도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7., 2024. 9. 19.〉

제23조(보상금 반환)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은 반환하여 야 한다.

제5장 기술사업화 이해충돌 방지 [본장 신설 2023, 5, 23,]

- 제24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교직원 등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 직무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 1. 발명 권리화
 - 2. 발명의 기술이전
 - 3. 교원창업
 - 4. 실험실 기반 학생 창업
 - 5. 교원창업기업
 - 6.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직무

[본조 신설 2023. 5. 23.]

제2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교직원 등은 본 규정 제24조에 따른 이해 충돌의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단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본조 신설 2023. 5. 23.]

제26조(제재조치 등) 본교 및 산학협력단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이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본조 신설 2023. 5. 23.]

제6장 보 칙

제27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교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 본교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 1. 본교와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 2. 본교가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 3. 본교가 교직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 4. 본교가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규정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 6. 본교와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 7. 본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 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본교와 교직원 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본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본교와 교직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 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교 또는 교직원 등은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9.〉
-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실시를 위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9.〉
- 제29조(비밀의 유지) ① 발명자 및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부서는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 및 제14조, 제17조에 의해 자문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9. 19.〉
- 제30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3.12.1.>

이 전문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7.>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5. 23.>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9. 19.>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10. 2.>

이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